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45호)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05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0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64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7405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7603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V. 검토의견	5
1.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5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64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II.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74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

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Ⅲ.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760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7.

다. 회 부 일 : 2025. 1.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현행	윤준병의원안	김영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신설></u> ※ 현행: 지침으로 규정	○ <u>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 우선 고려</u>	○ <u>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반영</u>	○ <u>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u>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준병의원안은 비수도권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영호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정태호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수도권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현실적으로 비수도권 등은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⁵⁾,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영호의원안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태호의원안은 수도권 사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데,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수도권 지역 중 낙후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진행에 기여할 수 있음.

수도권 내에는 균형지표 중위값이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시군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가령, 주간인구지수 및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은 수도권 중위값이 전국 중위값보다 낮으며, 각각 수도권

5)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B/C 비율을 검토한 결과 강원과 전남권은 평균 0.4대이고, 전북과 경남권은 0.5대, 특별·광역시시는 0.98로 나타나 B/C의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통과율은 특별·광역시가 69%인데, 강원권은 20%대에 불과하여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2019. 12).

시군구의 62% 및 50%가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였음. 또한, 상용 근로자 비중, 노후주택비율,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재정자립도(3개년 평균)는 15~39%의 수도권 시군구가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였음.⁶⁾

< 균형 지표값이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시군구 비중 >

지표	전국 중앙값	수도권 중앙값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간인구지수	102.6	94.9	52% (13/25개)	70% (7/10개)	68% (21/31개)	62% (41/66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13.87	13.63	40% (10/25개)	60% (6/10개)	55% (17/31개)	50% (33/66개)
상업근로자 비중	59.6	63.8	48% (12/25개)	40% (4/10개)	32% (10/31개)	39% (26/66개)
노후주택비율	30.3	19.5	16% (4/25개)	50% (5/10개)	23% (7/31개)	17% (11/66개)
유아(0~5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	16.3	17.1	48% (12/25개)	30% (3/10개)	23% (7/31개)	36% (24/66개)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27	38.1	16% (4/25개)	40% (4/10개)	6% (2/31개)	15% (10/66개)

자료: 서울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이와 같이 수도권 내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분석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수도권 내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경제성 분석 B/C 값이 0.8 미

6) 서울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2024. 3.

만임에도 불구하고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0.5보다 높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은 수도권이 2.4%(42건 중 1건), 비수도권이 20.3%(138건 중 28건)로 큰 차이가 났음.⁷⁾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에서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수행절차는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 ② 경제성 분석 → ③ 정책성 분석 → ④ 지역균형발전 분석 → ⑤ 종합평가 → ⑥ 정책제언’ 순으로 규정되어 있음.⁸⁾ 이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며, AHP 수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 범위를 적용함.

7) 서울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2024. 3.

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있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별도의 수행절차 및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으로 구성됨.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수행절차 >

구분	내용	비고
사업의 개요 및 쟁점 파악	사업의 개요	배경, 목적, 추진경위, 추진주체, 내용 등
	기초자료 분석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 적환경·기술환경 자료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B/C 분석) 비용·효과 분석(C/E 분석)	B/C 비율 1.0 이상 경제성 有
정책성 분석	사업추진 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등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사업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보화사업은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종합평가	계층화분석법(AHP)	AHP 비율 0.5 이상 사업시행 적정
정책제언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전체적인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 AHP 수행 시 평가항목 가중치 >

(단위: %)

구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건설사업	비수도권 유형	30~45	25~40	30~40	
	수도권 유형	60~70	30~40		
정보화 사업	B/C	40~50	20~30		30~40
	E/C	30~40	20~30		40~50
기타 재정사업	B/C	25~50	50~75		
	E/C	20~40	60~80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9)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지침 등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 중으로 법률에 따로 규정할 실익이 적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여러 분석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관련 효과만 별도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상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있음.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¹⁰⁾ 또한,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제외¹¹⁾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보완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개편 현황(2019. 4.) ＞			
구분	기존	개편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5 ~ 50%	30 ~ 45%	60 ~ 70%
②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③ 지역균형발전	25 ~ 35%	30 ~ 40%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3.

또한, 2022년 12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효과 분석항목으로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이전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았으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지역낙후도가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되어 비수도권 대도시의 불이익이 해소됨.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신설하고,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22. 12.)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22. 12. 20. 시행)

제64조(균형발전효과 분석)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효과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로서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
- ② 제1항 제1호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2. 12. 20. 시행)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⑥ 지역균형발전 요인

③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
--------------	--

그리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¹²⁾의 경우 사업별 특수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12)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정책적 타당성 분석) ②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셋째, 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수도권 내 투자 확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자본스톡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면적 1km² 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의 15.7%인 383억원임. 또한 지역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1인당 인프라 규모도 비수도권대도시¹⁴⁾는 2,400만원으로 수도권 대도시(2,700만원)에 비해 낮음 수준임.¹⁵⁾

이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용이해지도록 규정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4) 수도권 대도시는 서울, 인천이며 그 외 지역 대도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을 의미함.

15)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4.6.19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김영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조의 규정에 따 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현 행과 같음)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현 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 과 같음)		
15. 제38조제2항 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 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5. 제38조제3항 ----- ----- ----- -----		
16. (생략)	16. (현행과 같 음)		
제38조(예비타당 성조사) ① (생 략)	제38조(예비타당 성조사) ① (현 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 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 음)	제38조(예비타당 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 음)
<신설>	②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역에서 추진하 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제38조 제2항 및 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u>제38조 제3항 및 제7항</u> ----- ----- ----- ----- -----	② ----- ----- ----- ----- ----- <u>제38조 제2항 및 제7항</u> ----- ----- ----- ----- -----	② ----- ----- ----- ----- ----- <u>제38조 제2항 및 제7항</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u>제68조 제1항 및 제70조제2항</u>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1조(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 ----- ----- -----	제71조(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현행과 같음) ----- ----- ----- ----- ----- ----- ----- ----- -----	제71조(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현행과 같음) ----- ----- ----- ----- ----- ----- ----- ----- -----

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제출하 는 경우로서 첨 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 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제2항 (제85조에 따 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 다)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 의 내역 및 사유	7. 제38조제3항- ----- ----- ----- ----- ----- ----- ----- ----- ----- ----- -----		

문 의 처
02)6788-5155